

#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2005~1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	2005. 1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## ■ 제정 이유

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은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, 모든 군민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 주도의 “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■ 주요골자

-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.(안 제1조)
-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, 기관 등이 참여 할 수 있으며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 및 제4조)
- 추진위원회는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 연임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5조 및 제6조)
- 위원회 회의는 연2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, 심의·의결한 사항은 군 공보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.(안 제9조 및 제10조)
-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,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. (안 제11조 및 제13조)

## ■ 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조
- 경상남도 행정과-10151(2004.11.05) 『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』 시행계획

##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“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”(이하 “제자리 찾기 운동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제자리 찾기 운동”이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·자발적인 실천운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참여범위)**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.

**제4조(지원)**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행정·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5조(추진위원회 설치)** ①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위원회는 30인 내외로 구성한다.

**제6조(임기)**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원회의 기능과 구성)**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·홍보 및 심의·의결
2.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
3. 제자리 찾기 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
4.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,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8조(위원장의 직무 등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9조(위원회 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, 간사는 대외협력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.

④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.

**제10조(의결사항 등 처리)**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을 군 공보 및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1조(위촉 및 해촉)** ①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②위원이 직무와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 한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 할 수 있으며,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12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운영규정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